□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알림

Ⅰ. 참여연구원 허위 · 부당 등록 사례

연번	대학명	연구책임자	참여연구원 허위·부당 등록 내용	처분
1	A 대학교	정교수 A	▶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휴학 · 졸업생을 학생연구원으로 허위 등록	파면
2	B 대학교	정교수 B	▶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적 · 휴학 · 졸업생을 학생연구원으로 허위 등록	파면
3	C 대학교	정교수 C	▶ 공공기관 · 민간기업 취업자를 학생연구원으로 부당 등록	파면
4	D 대학교	정교수 D	▶ 공공기관 · 민간기업 취업자를 학생연구원으로 허위 또는 부당 등록	파면
5	E 대학교	정교수 E	▶ 민간기업 취업자를 학생연구원으로 허위 등록	해임
6	F 대학교	정교수 F	▶ 공공기관 취업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	해임
7	G 대학교	부교수 I	▶ 공공기관 · 민간기업 취업자를 학생연구원으로 부당 등록 ※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 (업무상 횡령)으로 고발 조치	정직
8	H 대학교	부교수 J	▶ 민간기업 취업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	정직
9	I 대학교	정교수 L	▶ 공공기업 취업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	징계
10	J 대학교	정교수 M	▶ 공공기관 취업자를 학생연구원으로 부당 등록	징계
11	K 대학교	정교수 N, O	▶ 군복무 중인 자녀를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	징계
12	L 대학교	정교수 P	▶ 고등학교 교사, 학원강사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	징계
13	M 대학교	정교수 R	▶ 국립대 조교, 중학교 교사를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	징계
14	N 대학교	정교수 S	▶ 공공기관 취업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	징계
15	O 대학교	정교수 K	▶ 민간기업 취업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	정직
16	P 대학교	전임대우강사 W	▶ 공공기관 취업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	징계
17	Q 대학교	정교수 X	▶ 고등학교 교사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	징계

Ⅱ. 참여연구원 연구비 부당 지급 · 집행 사례

연번	대학명	연구책임자 등 관련자	연구비 부당 지급 · 집행 내용	처분
1	A 대학교	정교수 A	▶ 참여연구원 11명을 허위로 등록하고, 참여연구원 48명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연구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부를 용도불명하게 사용	파면
2	B 대학교	정교수 B	▶ 참여연구원 12명을 허위로 등록하고, 참여연구원 29명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연구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부를 용도불명하게 사용	파면
3	C 대학교	정교수 C	▶ 취업자 4명을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하고, 연구비를 일괄관리하면서 일부를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	파면
4	D 대학교	정교수 D	▶ 참여연구원 5명을 허위로 등록하고, 취업자 7명을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하여 연구비를 일괄관리하면서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	파면
5	E 대학교	정교수 E	▶ 취업자 8명을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하고, 연구비를 일괄관리하면서 일부를 용도불명하게 사용	해임
6	F 대학교	정교수 F	▶ 참여연구원 2명을 허위 · 부당 등록하고, 연구비를 일괄관리하면서 일부를 용도불명하게 사용	해임
7	G 대학교	부교수 G	▶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비를 일괄관리하면서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	징계
8	H 대학교	정교수 H	▶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비를 일괄관리하면서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 또는 용도 불명하게 사용	징계
9	I 대학교	부교수 I	▶ 연구비를 일괄관리한 사촌동생이 참여연구원 7명을 허위 등록하고, 사촌동생이 일괄관리하던 연구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	정직
10	J 대학교	부교수 J	▶ 참여연구원 2명을 허위 등록하고,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	정직
11	K 대학교	정교수 K	▶ 취업자 2명을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	정직
12	L 대학교	정교수 L	▶ 참여연구원 3명을 허위 등록하고, 연구비를 일괄관리하면서 일부를 용도불명하게 사용	징계
13	M 대학교	정교수 M	▶ 참여연구원 11명을 허위 등록하고, 연구비를 일괄관리하면서 일부를 용도불명하게 사용	징계
14	N 대학교	정교수 N, O	▶ 군복부 중인 아들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23,422,000원을 부당 지급하고 해당 연구비를 아들이 사용	징계
15	O 대학교	정교수 P, Q	▶ 참여연구원 5명을 허위 등록하고, 연구비를 일괄관리하면서 일부를 용도불명하게 사용	징계

16	P 대학교	정교수 R	▸ 취업자 2명을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하고, 연구비를 일괄관리하면서 일부를 용도 불명하게 사용	징계
17	Q 대학교	정교수 S	▸ 참여연구원 1명을 허위 등록하고, 연구실 소속 학생들이 사용	징계
18	R 대학교	정교수 T	▸ 연구비를 일괄관리하다가 행정원이 연구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	징계
19	S 대학교	정교수 U	▸ 연구비를 일괄관리하다가 행정원이 연구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	징계
20	T 대학교	전임대우 강사 W	▸ 참여연구원 14명이 허위 등록하고, 연구비 일부를 용도불명하게 사용	징계
21	U 대학교	정교수 X	▸ 참여연구원 3명을 허위 등록하고, 연구비 일부를 용도 불명하게 사용	징계
22	V 대학교	정교수 V	▸ 연구비 일괄관리	징계